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0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보심사지침」 신설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음 -

-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 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부 칙

-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2022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I. 행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			I. 행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가-2 입원료	<신설>	<신설>	가-2 입원료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입원료 심사기준에 따라 입원하는 경우,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단순 통원불편·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3.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현 행			개 정			
I.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I.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 항목에 대한 사항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키-1 상급병실료	<신설>	<신설>	키-1 상급병실료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교통사고환자가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1) 건강보험의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제2부제1장 기본 진료료 [산정지침] 2.다.(6)격리실 입원료) 적용 가능 환자(※이 경우, 격리실 입원료로 산정) 2)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높은 환자로 반드시 격리가 필요한 경우 3)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의 24시간 상시 monitoring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보 험진료수가 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 제3호

현행			개정			
					<u>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u> <u>○ 입원진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u> <u>여유 일반병실(남녀 구분하여 각각의 일반병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u>	